**숭실대학교**

**멀티미디어연구회 회칙**

|  |
| ---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명 칭 ]

본 연구회는 숭실대학교 내의 멀티미디어 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멀티미디어 연구회(이하 본회 또는 본 연구회라 칭함)는 앞으로 누구나가 접하고 친숙하게 될 멀티미디어란 새로운 학문 분야에 관심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숭실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숭실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에 선도화와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3 조 [ 모 임 ]

가. 본 연구회의 정기적인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으로 한다.

나. 필요에 따라서 회장의 소집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다. 대면 모임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
| --- |
| **제 2 장 회 원** |

제 1 조 [ 회원의 구분 ]

가. 본 연구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나. 회원의 자격은 현재 숭실대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으로 한다.

다. 단 졸업 후에는 자문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 2 조 [ 회원의 자격 ]

가. 자문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연구회 활동을 충실히 한 회원으로 졸업한 회원으로 한다.

제 3 조 [ 회원의 권한 ]

가. 정회원

1. 본 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운영진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

3. 총회와 운영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권을 갖는다.

4.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을 권리를 갖는다.

나. 자문회원

1. 총회와 운영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권을 갖는다.

2. 필요한 경우,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4 조 [ 회원의 가입 ]

가. 매년 정기적으로 가지는 공식적인 가입 신청을 한 자로 한다.

나. 단 총회와 운영회의의 의결에서 인정된 경우 특별히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 가입신청서

성 명 :

학 과(부):

학 번:

학 년:

전화번호 :

제 5 조 [ 회원의 탈퇴 ]

가. 정회원과 자문 회원인 경우 총회에 탈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 회원의 제명 ]

가.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나. 제 2장 7조 [ 회원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를 거쳐서 제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본회의 재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동아리 연합회와 창작전시분과에서 요청했을 때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라. 운영위원회 판단 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제명할 수 있다.

제 7 조 [ 회원의 의무 ]

가.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나. 운영진에서 의결한 모든 의결사항과 세부규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다. 본 회의 기본 질서의 유지와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하게 한다.

라. 본회의 회원은 매월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마. 정회원은 본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연구와 세미나, 프로젝트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바. 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운영회의의 결의를 거쳐 강등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  |
| --- |
| **제 3 장 조 직** |

제 1 조 [ 조 직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총무 1인

\* 기획(교육부장) 1인

위의 조직을 운영진이라 칭한다.

제 2 조 [ 운영위원의 역할 ]

가. 회장

1.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와 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2. 본 회의 모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부회장

1. 회장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회장을 대행한다.

다. 총무

1. 총무는 본회의 예산을 관리한다.

2. 총무는 회비를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라. 기획(교육부장)

1. 본회의 정회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2.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 등에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제 3 조 [ 운영회의의 기능 ]

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칙과 활동들에 대해 의결한다.

나. 운영회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중요 안건에 대한 회원 투표를 결의할 수 있다.

라. 운영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보고한다.

마. 운영회의는 회칙개정을 의결할 수 있으면 이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이 된다.

제 4 조 [ 운영회의 모임과 의결 ]

가. 운영회의는 운영진을 위원으로 해서 월 1 회를 갖는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운영 위원의 요구에 따라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일주일 전에 공지사항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영회의의 의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다. 운영위원은 운영회의 소집을 회장에 요구할 수 있다.

라.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외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확대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마. 운영회의의 의결은 전체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  |
| --- |
| **제 4 장 총 회** |

제 1 조 [ 총회의 기능 ]

가. 본 회는 총회를 소집하여서 회칙개정과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새 회기 년도를 위한 계획들을 결의, 신운영진 선출을 한다.

나. 총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제 2 조 [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가. 총회 참가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나.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다. 총회는 정회원수의 3분에 1이상되는 회원이 참석한 경우 개회된다.

라.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정하며 총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마.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 3 조 [ 정기 총회 ]

가. 정기 총회는 연 1회 10월에 갖는다.

나. 정기 총회는 소집 한 달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4 조 [ 임시 총회 ]

가. 임시 총회는 운영회의의 결의나 정회원의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나. 임시 총회는 소집 일주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  |
| --- |
| **제 5 장 선 거** |

제 1 조 [ 피선거인 자격 ]

가. 본 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3인 이상의 공개 추천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나. 모든 운영 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 선거 절차 ]

가. 회장은 총회의에서의 선거로 선출한다.

나. 회장을 제외한 운영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 선거 일정은 회장이 정한다.

라. 회장은 참석인원의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제 3 조 [ 운영위원의 임기 ]

가. 운영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나. 회장은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하다.

다. 다른 운영위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

제 4 조 [ 보궐선거 ]

가. 잔여임기가 2개월 이내(60일)이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나. 보궐선거 세부사항은 제 5장 20조를 따른다.

다. 보궐선거는 부회장이 선거 2주 전에 공고한다.

제 5 조 [ 운영위원직의 박탈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직 박탈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의 운영위원직 박탈탄핵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참석인원 3분에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 위원의 자격 박탈을 결정한다.

|  |
| --- |
| **제 6 장 회칙 개정** |

제 1 조 [ 회칙 개정 발의 ]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운영회의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동의와 제청으로 이루어지며 재청 후 4주 이상 공고한다.

제 2 조 [ 개정 회칙의 발효 ]

개정된 회칙은 부칙에서 명시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부 칙** |

제 1 조 ( 시행 )

본 회칙은 본 연구회 개설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 또는 확대 운영진 의결에 따른다.

제 3 조

본 회칙에 위배되는 시행세칙은 무효로 한다.